

소비자보호·분쟁

숙소 12,000여 개소를 의무보험 대상에 넣으면 손님은 무엇을 얻나

이 보험의 실질은 과태료가 아니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다

행정안전부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자료와 재난안전법·상법의 책임보험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단계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서 남는 공백을 구분합니다.

발행	연번	읽는 시간	작성
2026.08.19	2026_38	6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원문 확인일		
2026.08.19	2026.08.30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 제도가 피해자에게 주는 실질이 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라고 봅니다. 그 권리는 가입한 시설에서만 생깁니다. 시행령 개정은 아직 추진 단계이고, 이용자가 가입 여부를 예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현행 법률에 없습니다.

확정된 사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신규 지정 예정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행령 개정 추진
신규 포함 시설	약 1만 2천곳	9,800여곳+2,300여곳 등
현재 대상	음식점·숙박시설 등 20종	행정안전부 발표
재물손해 한도	사고당 10억원 이내	시행령 제83조의4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 이하	재난안전법 제82조
시행일	아직 미확정	입법 절차 진행 단계

발표자료는 두 업종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끝났거나 적용이 시작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표의 어느 호에 넣는지와 부칙의 시행일·경과규정이 정해져야 실제 가입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생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과태료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책임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 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재산이 부족해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의무가입 시설은 법률이 모든 업종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별표에 없는 업종은 개정 전까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확대도 두 숙박업종을 별표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미가입 과태료는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입니다. 사고가 난 뒤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과는 재원·지급주체·절차가 다릅니다. 피해자 보호 효과는 실제 가입과 직접청구가 가능할 때 생깁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도시민박이나 한옥체험 숙소에서 화재·폭발·붕괴로 다치거나 물건을 잃은 이용자입니다. 재물손해 보상한도는 사고당 10억원 이내이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사업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이 보험을 상대로 한 직접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책임보험도 없다면 이용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실제 회수는 사업자의 재산 상태에 좌우됩니다. 예약 화면에는 가입 여부나 보험회사·증권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뒤에야 가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정보 비대칭이 남습니다.

도시민박업	9,800여곳	신규 포함 예정
한옥체험업	2,300여곳	신규 포함 예정
합계	약 1만 2천곳	발표자료 표현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시행일과 경과규정 발표자료에는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과 기존 등록 숙소의 가입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02 예약 전 확인 수단 이용자가 숙소 예약 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공개 절차가 현행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03 미가입 사고의 공백 미가입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대신 보상하는 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04 보상한도 초과분 보험한도를 넘는 손해는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지급능력 위험이 남습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도시민박이나 한옥체험 숙소를 예약할 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회사·증권번호를 사업자에게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나면 숙소 이름·주소·등록 업종과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보험회사에 직접청구 절차를 문의합니다. — 사업자가 가입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허가·등록 관청에 문의합니다.
대상 회사	—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는 가입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입확인서에 증권번호·보상한도·사고접수 창구를 함께 표시합니다. — 숙박 플랫폼은 예약 화면에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확인일을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합니다.
당국	— 시행령 입법예고 때 별표의 호 번호와 시행일·경과규정을 함께 공개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의 가입 정보 가운데 이용자가 예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갈림길 · 두 업종을 시행령 별표의 어느 호에 넣을지와 기존 등록 숙소의 경과조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B 시설 사용 개시일까지 ·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 별표와 부칙에서 호 번호·시행일·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제도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상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금융상품 주택화재보험 피해구제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7건

7 확인 항목	41차 자료	1 파생 계산	6개월 뒤 추적 예정
---------	--------	---------	-------------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01	2차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2일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2	2차	현재 대상 20종, 신규 포함 시설 약 1만 2천곳 행정안전부 발표 원문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3	1차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 의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4	1차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 이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5	1차	피해자의 보험회사 상대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6	1차	재물손해 사고당 10억원 이내와 시설별 가입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4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7 파생 시행령 별표 시설 번호가 1호부터 20호까지 이어짐 시행령 제83조의4 제3항의 17호.819호·20호 열거에서 계산 · 원문 확인 2026-08-30 계산식

추적 예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정하는 별표 호 번호, 시행일, 기존 등록 숙소의 경과규정과 이용자용 가입조회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PDF의 원호수 056과 관계없이 사이트 게시 순서에 따라 제38호를 부여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추진 단계라는 점과 과태료·직접청구권의 차이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행정안전부·보험회사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은 시행령의 시행 여부, 보험계약과 사고 사실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